

회사의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진술한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

1. 일반사항

1. 회사명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2. 회사고유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3. 법인등록번호	(시스템에서 자동입력)							
4. 법인 구분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식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주식회사 / 기타 비상장주식회사 / 유한회사							
4-1 금융회사에 해당 여부								
4-2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								
5. 감사계약 해지일자	yyyy - mm - dd							
6. 감사계약 해지일이 속한 사업연도	제	기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7. 해임된 감사인명								
8.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해지일이 속한 감사차수	▼ 1년차 / 2년차 / 3년차							

기재상의 주의

4. 감사계약 해지일 현재 기준으로 구분한다.

- 4-1. 금융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말한다.
- 4-2.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그 외 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 8.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 감사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감사차수가 1년차, 2년차 또는 3년차인지 확인한 후 반드시 기재한다.

2. 전기감사인 해임 관련 사항

1. 전기감사인을 해임한 사유		
2. 전기감사인 해임 확인·서명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 해당 / 해당없음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	▼ 해당 / 해당없음
3. 전기감사인이 진술한 의견		
4. 제출할 문서 첨부		
4-1. 전기감사인 해임관련 의견진술 내용보고서 제출공문		
4-2.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해임 확인·서명 문서		
4-3. 전기감사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		

기재상의 주의

- 4-1. 회사가 해임되는 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 동 공문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에 따라 전기감사인의 해임관련 의견진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 4-2. 감사위원회나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감사인을 해임하기 위해 확인 또는 서명한 문서를 첨부한다.
- 4-3. 전기감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첨부한다.